

# 대학평가 규정(3-1-25)

제정일 : 2019.03.20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체평가, 학과평가, 부서평가, 만족도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3조(주관부서)** 평가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. 다만, 제1조에서 규정한 평가 이외에는 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그 결과를 기획처로 제출해야 한다.

## 제2장 자체평가

**제4조(정의)** “자체평가”란 우리 대학교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사항과 교육조직, 행정조직, 지원시설 등 각 기관 및 부서를 점검·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5조(평가시기)** 자체평가는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시기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6조(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등)** ①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양대학교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입학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대학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,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총장이 교직원 중에 임명하고, 외부위원을 2인 이상 임명할 수 있다.

④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영역 관련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.

**제7조(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)**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자체평가·학과평가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

2. 자체평가·학과평가 결과의 분석, 활용 및 행·재정 지원
3. 자체평가·학과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자체평가·학과평가와 관련된 주요사항

**제8조(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)**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평가지표 및 평가방법)** 자체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은 평가 실시 전에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자체평가 절차)** ①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자체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하여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, 이를 심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자체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** ① 총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자체평가 결과는 발전계획 수립, 교육여건 개선, 교육·연구의 질 제고 및 행·재정 지원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**제12조(간사)** 자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대학성과평가센터 팀장으로 한다.

**제13조(포상)** 대학자체평가 결과 우수 학과(부)·부서 및 교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**제14조(시행지침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.

### 제3장 학과평가

**제15조(학과평가의 목적)** 학과평가는 학과(부)간 경쟁시스템을 통하여 연구 및 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도모하며, 각종 대·내외평가에서 대학의 위상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16조(평가단위)** ① 학과평가 대상의 평가단위는 학칙에 따른다

② 신설 후 4년 이하로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학과(부)는 학과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학과(부)명을 변경한 학과(부)는 이전 학과평가 내용을 승계한다.

**제17조(평가주기)** 학과평가는 1년마다 1회 실시한다.

**제18조(평가항목, 평가지표 등)** ①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각종 대학평가 반영지표를 중심으로 하고, 세부사항은 학과평가 내규에 따른다.

② 학과평가를 실시할 때 우리 대학교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 대학교의 동일 내지 유사학과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**제19조(평가방법)** ① 평가방법은 각 지표별 정보공시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정보공시 미 해당 지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.

② 학과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해당 학과(부)에 소명기회를 부여한다.

**제20조(평가결과 활용)** ① 학과평가 결과는 우리 대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개선을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 부여, 학과(부)의 통폐합 및 입학정원 조정 등 학사구조개편, 신입교원 충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학과(부)의 통폐합 및 입학정원조정 등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## 제4장 부서평가

**제21조(부서평가의 목적)** 부서평가는 우리 대학교의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부서별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,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2조(평가단위)** 부서평가는 우리 대학교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서별로 실시한다.

**제23조(평가주기)** 부서평가는 1년마다 1회 실시 한다.

**제24조(평가대상)** 평가대상은 평가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업무성과로 한다.

**제25조(평가항목, 평가지표 등)**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공통지표, 고유지표, 자율지표로 구성한다.

**제26조(평가지표 확정)** 평가지표, 목표달성수준, 평가지표별 가중치, 평가방법 등

은 대학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

**제27조(평가지표 및 목표설정 입력)** 각 부서는 평가 주관부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평가지표, 목표설정, 목표달성방안, 성과 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평가결과 활용)** 부서평가 결과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, 재정배분, 부서의 차기 전략목표, 대학 경영개선, 예산 편성, 직원 인사평정, 인센티브 지급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## 제5장 만족도 평가

**제29조(만족도 평가의 목적)** 만족도 평가는 우리 대학교 행정전반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고 교육서비스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0조(평가)** ① 만족도 평가는 우리 대학교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.  
② 만족도 평가는 학생, 교수, 직원 및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.

**제31조(평가주기)** 만족도 평가는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32조(평가항목 등)** 만족도 평가의 절차·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**제33조(평가결과 활용)** 만족도 평가 결과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, 재정배분, 대학 경영개선, 부서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## 제6장 대학성과평가위원회

**제34조(구성)** ① 부서평가 및 만족도 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대학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기획처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전임교원과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간사를 두고, 간사는 대학성과평가 팀장으로 한다.

**제35조(기능)** ① 대학성과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부서평가 및 만족도 평가 기본계획 수립
  2. 부서평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확정
  3. 부서평가 및 만족도 평가의 분석, 활용 및 행·재정 지원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
  4. 대외 평가지표 향상을 위한 지표관리
  5.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
- ② 대학성과평가위원회는 우리 대학교의 대외 평가지표 향상을 위해 부서별로 공통 및 고유지표를 의무로 부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부서는 의무 성과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.

**제36조(회의)** ① 대학성과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대학성과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37조(실무위원회)** ① 대학성과평가위원회는 제35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평가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는 대학성과평가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대학성과평가팀장이 되고, 위원은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부서평가 지표 개발 및 보완
2. 부서평가 지표 적절성 검토
3. 만족도 평가 문항 개발
4. 그 밖에 평가 실무에 관한 주요사항

**제38조(실무위원회의 회의)**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39조(비밀유지 의무)** 위원은 재임 중이나 임기만료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**제40조(수당)** 대학성과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 대학교 자체평가규정, 부서평가내규는 폐지한다.